

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 신정호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입니다. 하지만, 노후·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던 주택 재개발사업의 범위가 시가지로 확대되고, 주거정비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다세대 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